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열에너지 등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규정〉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수열에너지 등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규정 ..... | 2 |

## I. 제안경위

2024년 7월 5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 Ⅲ. 검토의견

#### 1. 수열에너지 등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인 경우, ②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③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br>① ~ ⑤ (생략)<br>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br>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br>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br>을 감면할 수 있다.<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 |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br>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br>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b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br>금을 면제한다.<br>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br>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br>사용하는 경우<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br>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br>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br>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br>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br>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하 |

| 현행         | 개정안                                                                                                                                                                       |
|------------|---------------------------------------------------------------------------------------------------------------------------------------------------------------------------|
| ⑦ ~ ⑪ (생략) | <p>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p> <p>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p> <p>⑦ ~ ⑪ (현행과 같음)</p> |

물이용부담금은 현행법 제19조<sup>1)</sup> 등에 근거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수

- 1)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질을 개선하고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수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며(1톤당 170원), 해당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 제19조제6항은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인 경우, ②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③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2)</sup>.

시행령은 특히, ③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열에너지(Hydro Thermal E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nergy)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열원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현행법은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이 직접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장려와 수열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감면 근거를 시행령 또는 법률에 두는 것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감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의 개정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 환경의 유동성 여부, 동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19조제3항은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sup>3)</sup>, 개정안의 면제 규정을 이와 함께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률뿐 아니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수계법에도 해당 사항이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 시 이들 법률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533 |

3)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